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장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5.

발 의 자 : 김장겸 · 박충권 · 조정훈
추경호 · 최은석 · 서범수
이상휘 · 서천호 · 강대식
인요한 · 서일준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의 학업·직업·경력, 병역신고사항, 재산 및 납세 실적, 범죄경력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증빙서류만으로 공직후보자의 사적이해관계등을 검증하기에 부족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윤리성을 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하고자 함(안 제5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295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한한다.

6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보고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사청문회 등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)	제5조(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)
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 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 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다만, 제6호의 경우에는 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통 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 원후보자에 한한다.
1. ~ 5. (생 략) <신 설>	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증보 고서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